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안내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성과 보상

소극행정 예방·혁파

YOU&NAMGU 부산광역시 남구

목차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안내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성과 보상
소극행정 예방·혁파

적극행정이란? 04
적극행정 제도소개

의사결정 지원제도란? 06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
우리 구 사전컨설팅제도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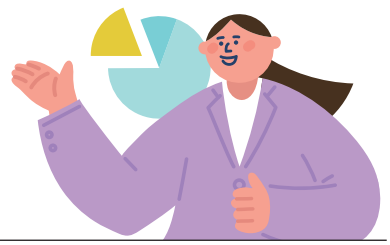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10
적극행정 면책제도
법적 조력지원
공무원 책임보험

적극행정 성과 보상 1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24
소극행정의 유형 및 판단기준
소극행정 신고제도
소극행정 엄정조치

적극행정 국민신청 27

알아보자~

우리 곁에 적극행정!!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제도소개

의사결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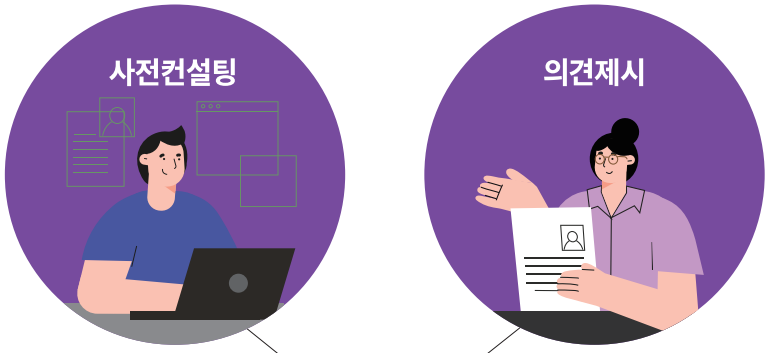

인가 · 허가 · 등록 · 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 **감사기구의 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
- **적극행정위원회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적극행정 면책제도	법적 조력지원	공무원 책임보험
- 징계요구 등 면책 - 징계 등 면제	-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비용 등 지원에 관한 규칙 - 부산광역시 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 행정종합배상공제

적극행정 성과 보상

우수공무원 선발 / 인센티브 부여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우대등급에 따라
인사상 인센티브,
포상금 등 부여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 신고제도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

소극행정 엄정 조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의사결정 지원제도란?

인·허가 등 규제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의견 제시 요청)

처리절차

제외대상

1. 법령이 명확한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이용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거나 해결이 가능한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4. 수사·소송·행정심판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5. 신청기관의 인사·급여 등 행정청의 내부문제로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단순 법령 해석 또는 제도나 법령 개선 건의와 관련된 경우
7.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사전컨설팅의 효과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대상이 되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제16조(징계 등 면제)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처리절차

제외대상

❶ 관계법령이 명확한 경우
❷ 단순 민원해소 목적인 경우
❸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❹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경우
❺ 감사·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의견제시의 효과

-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 의견제시를 받은 사안에 대해 상급기관 감사 등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 등 면제
- 적극행정위원회는 의견제시를 받은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면책 건의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의 관계

- 공무원은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쪽을 신청하여 **답변을 받은 경우**라도 **다른 쪽**으로 **신청 가능**
- 양측의 결과가 다른 경우 어떤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각각의 법령**에 따라 **면책 효력**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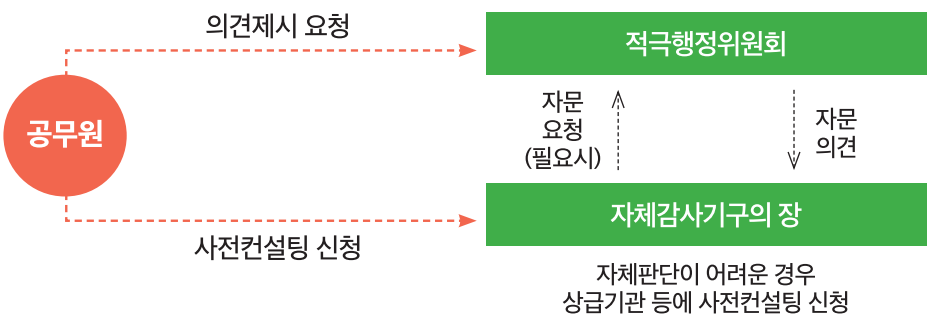

우리 구 사전컨설팅제도 활용 사례

사례

개별 원룸형 공용주택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개소 이전 설치 가능 여부 컨설팅

A법인이 운영 중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를 개별 원룸형으로 이루어진 공용주택에서 오후부터 취침 전까지는 한 원룸에서 입소자들과 종사자가 같이 생활하다가, 취침할 때만 입소자들이 각 원룸에서 자게하고 취침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AI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 컨설팅을 신청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은 각각의 원룸을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시설운영자가 관리하고 사회재활교사가 장애인 지도·관리를 위해 원룸에 상시 출입 가능하고 추가로 AI시스템으로 안전을 보완할 예정이므로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 건물에 공동생활가정 2개소를 운영할 경우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소규모 시설인 만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장앤인들의 자립과 사회성 제고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면 2개 공동생활가정을 동일 건물에 운영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개별 원룸형 공용주택으로 이전을 가능하게 하여 법인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이전 및 운영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함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일상감사부서의 계약 타당성 검토 필요 여부 컨설팅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상감사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은 감사기구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자치법규에 일상감사 대상이 아님에도 일상감사부서의 계약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컨설팅을 신청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전제 조건인 '일상감사대상'에 해당 여부 판단이 필요하며 그 판단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정해야 하는 사항이며, ○○구의 경우, 일상감사 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일상감사 대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회신함.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간 이견이 발생한 사례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타당성 검토를 생략하도록 하여 유사한 발생 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

사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건축허가가 승인 완료된 부지에 대한 토지수용가능 여부 컨설팅

A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2021.6.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완료 후 사업대상지 중 일부필지를 협의매수 하였으나, 2020.5. 미협의 필지에 대한 건축허가 승인 후 2023.2. 착공신고가 수리된 사실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건축허가 승인 완료된 부지에 대한 토지수용가능 여부에 대해 컨설팅 신청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토지 등의 수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 중이던 사업이 있더라도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비용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토지 등의 수용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가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하여 완성한 부분과 사업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의 손실 등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건축허가 승인 완료된 부지에 대한 토지수용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함.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연되는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결정 이후 건축허가가 승인 완료된 부지도 수용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도록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하는 제도

근거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제16조(징계등 면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면책요건

❶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업무를
❷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로
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및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처리절차

심사결과

- 심사결과는 최종 처분양정을 결정하는 때 최대한 반영
- 면책심사를 신청한 자와 면책심사의 대상자 및 그 소속부서의 부서장에게 통보

법적 조력지원

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교
• 남구 소속 공무원 –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포함 – 전출, 퇴직 공무원 포함	• 직무관련 민(형)사상 소송 – 변호인 선임 및 소송비용 지원	• 징계과정은 미포함 • 소송비용 회수 – 민사소송 :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패소판결 확정 시 – 형사사건 : 기소유예처분이나 유죄확정 판결 시 • 다만, 기소유예처분의 경우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등 회수하지 않을 수 있음 • 배상책임(판결배상금)에 대한 금전적 지원 없음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 남구 소속 공무원 – 퇴직 공무원 포함	• 적극행정으로 징계의결 등 요구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변호인 선임 비용 지원 • 기소 이전 수사과정 – 500만원 이하의 변호인 선임 비용 지원 • 민사상 소송 – 소송사무 처리규칙의 변호사선임비용 지원	• 소송지원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수사과정 등에서도 소송수행 지원 • 형사사건 유죄확정 시 소송비용 회수 ※ 민사소송 패소 시에는 소송비용 회수하지 않음 • 회수 대상이더라도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경, 면제 가능 • 다른 제도와 중복지원 된 금액은 반환 조치 • 배상책임에 대한 금전적 지원 없음

공무원 책임보험

행정종합배상공제

• 남구 소속 전 직원 – 공무직, 청원경찰 등 포함	• 업무상 과실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 소송비용 지원 – 배상책임 손해액 지원 (1청구당 최대 2억, 연간 10억 한도)	•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 없음 • 징계과정은 미포함 • 형사(수사), 민사 모두 가능 • 배상책임 지원(보험처리)

적극행정 성과 보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선발대상 : 전 직원(공무직, 비정규직 포함)
선발인원 : 반기별 5명 내외
선발기준
- 적극적, 도전적,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자
- 장기 미해결 과제, 갈등·현안 사항을 혁신적으로 해결한 자
-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한 자 등

선발절차

대상자 추천	사전심사	우수공무원 심의·의결	우수사례 전파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부서·주민 추천	후보자 선정	선발 및 인센티브 결정	결과 공개 및 우수사례 전파
기획감사실	사전심사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기획감사실

인센티브 및 포상금 부여

- 인센티브는 우대등급에 따라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부여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및 포상금은 변경 가능

우대등급			인센티브	포상금
최우수			특별승진	30만원
			특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승진 가점 부여	
	우수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20만원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교육훈련 우선선발(장기, 국외)	
		장려	희망 부서로의 전보 우선 선발(희망부서 3개 지정)	10만원
			교육훈련 우선 선발(단기, 국내)	
			특별휴가(3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례

우대등급

우수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2월 선발)

사례명

지역 숨은 로컬자원 발굴 관광콘텐츠 (AR 다이노투어) 개발

추진 배경

- 부산지질공원 지질탐방로의 관광자원 우수성 홍보 및 이기대 지역의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개발
- '이기대 지질공원'이라는 공간의 재미요소를 추출하여 '공룡'을 활용한 게임교육관광으로 개발하여, 교육체험(관광) 활성화로 신규관광객 유치

추진 내용

- 숨은 로컬 콘텐츠 발굴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2022. 4월)
- ARD이노투어 앱 디자인 프로그래밍 제작 협의 (2022. 6월 ~ 8월)
- 이기대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자료 제공(2022. 10월/ 국토교통부)
- ARD이노투어 리플렛(1,000매) 및 홍보스티커(10,000매) 등 3종 제작
- ARD이노투어 앱 출시 홍보 이벤트 행사

추진 성과

- 부산시교육청과의 ARD이노투어 교육체험 관광업무 협약
- AR 다이노투어 상품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례

우대등급

우수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2월 선발)

사례명

관내 지하차도 비상사다리 설치공사

추진 배경

- 최근 수년간 폭우로 인해 문현, 대남지하차도 침수피해 반복
- 지하차도 진입통제 전에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대피가 불가할 경우를 대비, 비상사다리를 설치하여 인명사고 예방

추진 내용

- 비상사다리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 비상사다리 설치 N=8EA(각 지하차도 4개소 설치)

추진 성과

- 2022. 10. 문현지하차도, 대남지하차도 비상사다리 설치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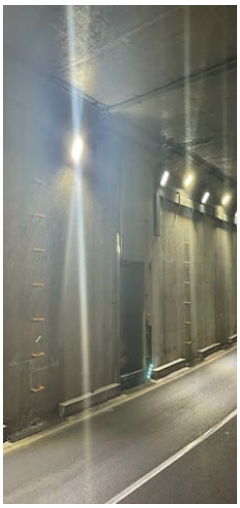

문현지하차도

대남지하차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례

우대등급

우수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2월 선발)

사례명

야간 · 빗길 시인성 개선을 위한 차선 시험도색 실시

추진 배경

- 교통 노면 차선표시의 경우 야간 및 빗길 주행시 시인성이 급격히 떨어져 교통사고 발생을 유발
- 노면표시 재도색 설치방법 중 가장 우수한 공법에 대한 자문 및 시험도색을 통하여 기존의 차선도색보다 우천 시 높은 휘도와 내구성을 가진 차선을 설치, 관내 교통 운행자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

추진 내용

- 2022. 07. 야간·빗길 시인성 개선을 위한 차선시험 도색계획수립
- 2022. 09. 착공 및 준공완료
- 2021. 09. ~ 12. 해당 차선구간 반사성능 측정의뢰(→ 도로교통공단)
- 3차례에 걸친 반사성능 측정결과 우천 시 높은 시인성 및 내구성 확인

추진 성과

- 기존 유리알을 낙하하는 시공방식에서 분사하는 시공으로 변경하여 유리알이 차선도료에 균일하고 깊숙이 박혀 차선이 훼손되어도 유리알이 탈리되는 현상을 방지 및 휘도 유지기간을 증가

설치 전

설치 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례

우대등급

장려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2월 선발)

사례명

주민참여예산 관리카드제 도입

추진 배경

- 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
- 예산 편성 시 주민 참여도는 높은 편이나, 예산 집행, 예산 결산 등의 단계에서는 주민 참여도가 낮은 실정임
-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 편성 여부, 집행 상황, 집행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예산 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도를 높이고,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

추진 내용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관리카드제 관리카드번호 관리를 통하여 주민제안사업 반영 여부 확인
- 주민 누구나 사업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정보 공개

추진 성과

- 지역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관리카드 공개(적정 10건, 부적정 20건)
- 주민자치회형 주민제안사업 관리카드 공개(4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례

우대등급

장려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2월 선발)

사례명

**발로 뛰는 현장 취재
「신재한 주무관의
현장을 가다」**

추진 배경

- 정보 전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동정소식을 선별해 직접 체험하며 보다 현장감 있게 내용을 전달해 주민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쉽게 내용을 전달

추진 내용

- 남구신문「신재한 주무관의 현장을 가다」13건 게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례

우대등급

장려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8월 선발)

사례명

홍법사 앞 도로 방문객 낙상사고 예방 등

추진 배경

- 대연동 홍법사 대웅전 앞에 2차선도로 조성되어 있음
- 도로 가장자리 황색실선으로 인해 차량 진출입 시 불법 차선변경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
- 또한, 흥법사 방문객이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표출형 도로표지병에 걸려 넘어져 낙상사고 수차례 발생
- 홍법사 신도들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해결 방안 모색 필요

추진 내용

- 2023. 3. 24. 현장점검 후 민원요청사항 남부경찰서 검토의뢰
- 2023. 3. 28. 남부경찰서 요구사항 일부 허용 회신
- 2023. 4. 28. 홍법사 일원 도로 노면 표시 작업 완료
- 2023. 5. 15. 홍법사 신도 교통시설물 사고 관련 민원사항 재접수
- 2023. 5. 16. 현장 민원사항 점검 후 의견 남부경찰서 검토 의뢰
- 2023. 5. 17. 남부경찰서 부정적 의견 회신
- 2023. 5. 18. 돌출형 표지병 제거
- 2023. 6. 30. 표지병 제거 위치 매립형 태양광 표지병 설치

추진 성과

- 황색실선을 점선으로 변경하여 불법 차선변경 문제 해결
- 표출형 표지병 일부를 매립형 발광 표지병으로 교체로 야간 시인성 확보를 통한 낙상사고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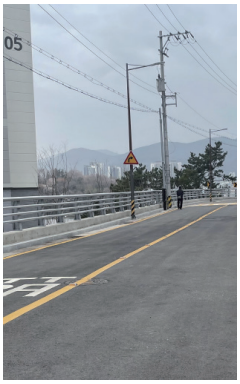

작업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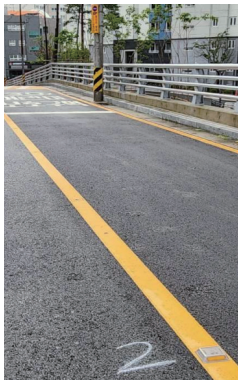

작업 후(돌출 표지병 제거)

작업 후(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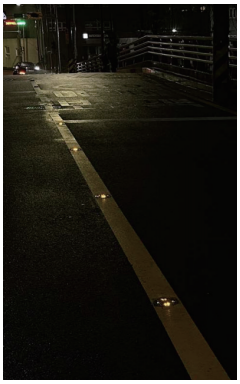

작업 후(야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례

우대등급

장려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8월 선발)

사례명

인도가 없어 이동시 주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용지에 안전한 보행통로 확보

추진 배경

- 문현2동 부산골프클럽(우암로375) 앞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 기획재정부 소유의 철도용지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단속할 근거 규정이 없어서 근본적인 민원 해결이 안 됨
- 문현2동과 문현4동을 연결하는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 안전 확보가 필요

추진 내용

- 위치 : 문현4동 부산골프클럽 앞(문현동 820-2, 820 등)
  ▶소유자 : 기획재정부(관리자:한국자산관리공사), 지목:철도용지
-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 아니므로 차량이동 등 강제 조치(단속) 불가
- 2023. 3. 10. 해당부지 관리자에게 안전조치 요청
- 2023. 3. 13. 자산관리공사의 조치계획이 없음을 확인,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 우리 구에서 볼라드 설치 등 협의 요청
- 2023. 3. 자진 이동 협조 안내문을 차량전면 부착
- 2023. 5. 26. 볼라드 설치 완료

추진 성과

- 도로교통법 적용이 불가한 지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오랫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토지 소유자와 적극 협의
- 꾸준한 관리와 신속한 조치로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기여

보행통로 확보 전

보행통로 확보 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례

우대등급

장려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8월 선발)

사례명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운영

추진 배경

- 담배꽁초의 무분별한 무단투기에 따른 가로환경 도시미관 저해
- 담배필터 해양유입 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의 시민의식 제고

추진 내용

- 사 업 명 :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운영
- 사업기간 : 2023. 3월 ~ 12월
- 참여대상 : 남구 주민 누구나
- 지급내역 : 담배꽁초 수거 전용팩 1팩당 종량제봉투 5리터 20매

추진 성과

-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추진 실적
  - ▶ 추진횟수 : 월2회 총15회
  - ▶ 참여인원 : 연1,064명
  - ▶ 수 거 량 : 2,207팩 441.4kg 상당
  - ▶ 수거보상 : 5리터봉투 41,480매, 3리터 4,110매(2023. 10월말 기준)
- 담배꽁초 보상 교환 장소 확대
  - ▶ 구청 자원순환과 1개소 →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18개소
- 주민들의 주인의식 제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례

우대등급	사례명
장려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8월 선발)	(부산최초)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추진 배경

-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가 및 가족 해체 등의 고립가구 발생
-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인적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인적 안전망 강화 필요성 증가에 따라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지원의 필요성 대두

추진 내용

-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 조례 제정에 따른 신속한 예산 반영 및 추진

추진 성과

- 부산 최초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시행
- 포상금 지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주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하고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활성화에 기여
  ▶ 위기가구 신고건수 16, 포상금 지급건수 5건 (2023. 11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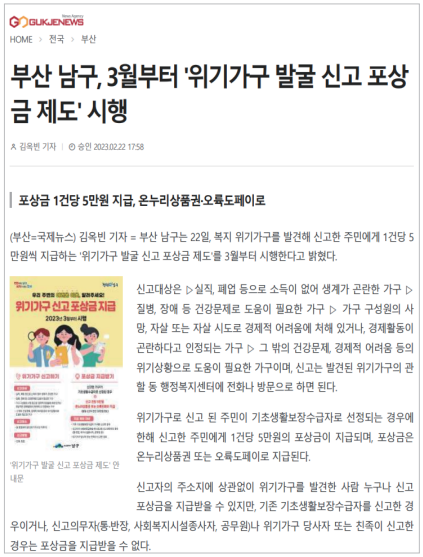
GUKJENEWS
HOME > 전국 > 부산

부산 남구, 3월부터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A 김욱빈 기자 | ⏲ 승인 2023.02.22 17:58

포상금 1건당 5만원 지급, 온누리상품권·오륙도페이로

(부산=국제뉴스) 김욱빈 기자 = 부산 남구는 22일, 복지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씩 지급하는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문

신고대상은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그 밖의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이며, 신고는 발견된 위기가구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하면 된다.

위기가구로 신고 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 한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오륙도페이로 지급된다.

신고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신고한 경우이거나, 신고의무자(통·반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나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례

우대등급

장려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8월 선발)

사례명

우리마을 다같이 다건강하게! 용호3동 독거노인 전수조사

추진 배경

-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인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에 용호3동이 선정되어, 주민참여 워크숍 실시
- 주민참여 워크숍 결과, 중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대두
- 주민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대상자별 집중 중재사업을 추진토록 함

추진 내용

- 「독거노인 사각지대 발굴단」 구성
  - ▶ 대상 : 용호3동 통장 21명
- 독거노인 전수조사 실시
  - ▶ 대상: 용호3동 거주 독거노인 1,061명
- 조사결과에 따른 중재 실시
  - ▶ (고혈압) 가정방문 또는 개별 연락·내소안내, 방문간호서비스 연계·의뢰, 우편발송
  - ▶ (치매) 치매안심센터 연계, 개별가정 방문 및 우편발송 실시
  - ▶ (우울)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반려채소(콩나물) 기르기 운영, 작은 도서관 소풍-우체통콘서트 연계하여 나들이 프로그램 실시
  - ▶ (기타) 보건교육서비스 원하는 자 대상 실버운동교실 1기(5회) 실시, 행정·복지서비스 요구도에 따라 해당기관 연계

추진 성과

- 주민 요구도를 반영한 계획수립 및 추진
- 주민등록인구(1,061명) 대비 75.7%(802명) 조사완료
- 맞춤형 보건 중재사업 실시
- 보건·복지·행정·주민 거버넌스 구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례

우대등급	사례명
장려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8월 선발)	대연1동 골목형상점가 지정 [주민 추천]

추진 배경

- 대연1동 내 대연골목시장은 미등록 시장이었음
- 따라서, 전통시장만 등록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을 고객들로부터 받아도 현금화하지 못하였음
- 전통시장보다 등록절차가 간편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대연1동 민남기 팀장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남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었음

추진 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상인회 구성 및 골목형상점가 구역을 결정하고 정기총회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명칭 지정,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임원 등 선정 및 회칙 제정의 절차가 필요
- 특히, 상인회를 구성을 위해서는 상점가 구역 내 상인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상기 작업을 위해 대연1동 민남기 팀장이 대연골목시장 전체상인명부 작성과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동의서를 받음
- 76개 점포중 53명이 동의하여 상인회 구성하였고 골목형상점가 구역 지번 및 면적을 작성함
- 창립총회 개최 및 주요내용 의결로 사전절차 완료 후(2023. 3.)
- 상인회 등록 신청서류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청에서 지정여건 부합여부 검토 후 지정서 발급함

추진 성과

- 남구 제1호 대연골목시장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의 유형 및 판단기준

적당편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판단기준

- 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이거나 적법한 사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판단기준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늑장 대응하는 행태
- 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부적법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판단기준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을 따르거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하는 행태
-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국민 편익과 공무원 개인 또는 소속기관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판단기준

-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규정·예산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함으로써 사적 이익 또는 소속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소극행정 신고제도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것

근거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신고방법?

소극행정 내용, 신고 취지, 희망조치 등을 기재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개설('19.3.22.)

처리절차

처리기한

일반 사안 14일, 현장조사 등 필요사안 14+7일 범위 내 연장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❶ 신고자가 기존에 민원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❷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❸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❹ 단순한 진정 및 불만의 표시

소관부서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민원으로 처리

소극행정 재신고제도

소극행정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인이 소극행정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신청요건

❶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 침해 또는 국자 재정상 손실 발생
❷ 소관 행정기관에 소극행정 신고 후에도 미해결

처리절차

소극행정 엄정조치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엄정하게 조치

근거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제2항(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징계의 감경)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승진임용의 제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 **징계기준**, 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마. 부작위 · 직무태만 (바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위 관련 감독자도 문책
※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징계 감경 불가
※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제한기간 6개월 가산

적극행정 국민신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국민신청제도란?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

*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시,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일반 민원과의 차이점

1. 신청요건

❶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❷ 타 민원·제안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❸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반려 또는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

2. 처리과정에서 적극행정 지원제도 개입

신청방법 : 국민신문고 '적극행정신청' 창구에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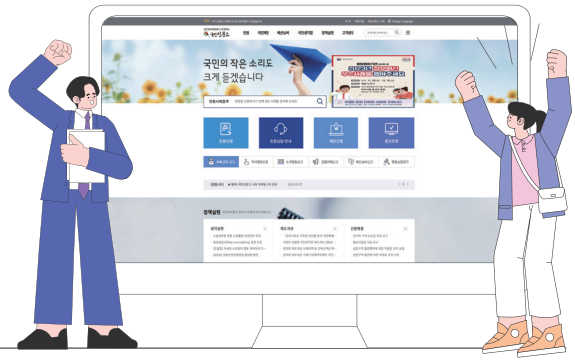

처리절차

적극행정
제도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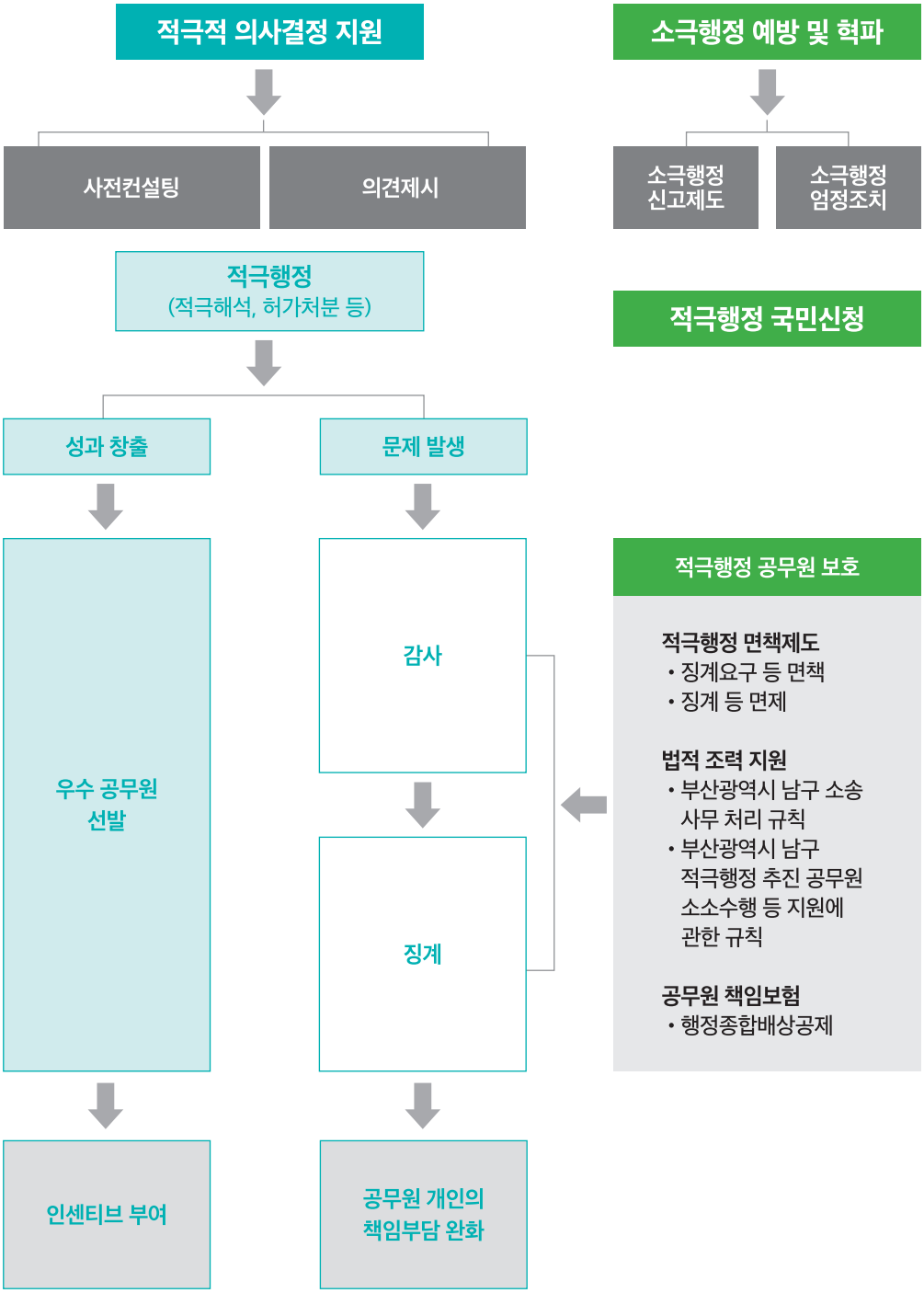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
사전컨설팅
의견제시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소극행정
신고제도
소극행정
엄정조치
적극행정
(적극해석, 허가처분 등)
적극행정 국민신청
성과 창출
문제 발생
우수 공무원
선발
감사
징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적극행정 면책제도
• 징계요구 등 면책
• 징계 등 면제
법적 조력 지원
• 부산광역시 남구 소송
사무 처리 규칙
•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소수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공무원 책임보험
• 행정종합배상공제
인센티브 부여
공무원 개인의
책임부담 완화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안내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성과 보상
소극행정 예방·혁파

YOU&NAMGU 부산광역시 남구